

의안번호	2220029
의 퇴 인	박지원 의원
회 답 일	2026.9.25.
추 계 번호	26A363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의2제2항(청정수소의 인증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사용·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대상, 기준, 규모, 기간,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 생산비용,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1. 청정수소의 생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청정수소 저장시설, 운송시설, 배관시설, 충전시설 또는 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청정수소의 생산단가와 시장가격 간 차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정수소의 품질관리, 인증, 계량, 거래 또는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 -5. 청정수소를 사용하거나 활용설비를 구축·운영하는 자 -6. 그 밖에 청정수소의 생산·저장·운송·공급·판매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의2제2항(청정수소의 인증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원대상을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서 청정수소의 생산·사용·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방법을 보조 또는 융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또한, 개정안은 지원대상, 기준, 규모,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청정수소의 등급, 생산비용,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들의 청정수소 생산 등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에 2026년 기준 40억 600만원을 편성함

[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 (회계, 코드)	주요내용	사업시행주체 (사업지원형태)	예산	
			2025	2026
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청정수소 예비시험 인증사업 (기후대응기금, 6433-511)	(예비인증) 수소 생산설비 구축 前, 인증 수요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사전평가 및 컨설팅 수행 (시험인증) 인증제 본격 시행 前 실제 수소 생산 설비에 대한 현장 방문 및 데이터 검증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를 시험적으로 수행 (LCI DB 및 전과정평가) 청정수소 인증용 국가 LCI-주요 기술별 투입물질 DB 구축 및 LCA 고도화 등 인증제도 정교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 구축	에너지경제연구원 (보조)	1,706	1,706

세부사업-내역사업 (회계, 코드)	주요내용	사업시행주체 (사업지원형태)	예산	
			2025	2026
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 -청정수소 인증역량 강화사업 (기후대응기금, 6433-511)	(인증플랫폼) 청정수소 인증의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안정적 보안관리 등을 위해 전용 시스템 구축, 각종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 등을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국제이슈 대응) 청정수소 인증 관련 국제동향 분석, 해외정부기관과 G2G 협력체계 구축,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한 인증방법론 고도화, 공통기준 마련 (계측 인프라 구축) 배출량 산정 및 인증 사후관리 등 시범수행을 위한 청정수소 설비의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구축	에너지경제연구원 (보조)	2,400	2,300

주: 2026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안에 따라 청정수소의 생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이들에게 보조 또는 융자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신설될 수 있어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존 사업은 청정수소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구체적 지원 범위가 명시되는 경우 지원사업이 확대·신설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 및 신규 사업 추진 여부·규모 등을 가정하여야 하나, 개정안은 지원 대상,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계에 필요한 변수들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나, 현 시점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임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노종우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노종우	02-6788-4675	namsan@assembly.go.kr